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4-3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2024-40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41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39
----------	---------

발의일자	2024. 04. 05.
발 의 자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1. 제안 이유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존 거창군 계획조례에 발전시설의 대상을 확대해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규정을 둠으로서 사업 시행 촉과 행복추구권을 바라는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로만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조 제목을 ‘발전 시설’로 개정함(안 제20조의3)
- 나. 풍력발전시설과 154kV 이상 송전선로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23 4항)
- 다. 이격거리 규정의 기준이 되는 시설의 정의를 정함(안 별표23 비고 5항 및 6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03. 08. ~ 03. 12.
 -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 【붙임】 참조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의 조 제목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태양광 발전시설”을 “발전시설”로 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u>태양광 발전시설</u>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u>군계획조례</u>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p> <p>② (생략)</p>	<p>제20조의3(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u>발전시설</u>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u>군계획조례</u>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23]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 울타리(웬스, 차폐수 등)를 설치하고, 울타리와 태양광 발전시설 사이에 2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 할 것.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울타리 높이는 1미터 이상, 이격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3.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발전용량(킬로와트)	나. 도로에서 직선 거리(미터)	다. 주거밀집지역이나 관광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미터)
300 미만	200	300
300 이상 600 미만		400
600 이상 1,000 미만		500
1,000 이상		600

<신 설>

4. 풍력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계에서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주민의 8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풍력발전기 (미터)	154kV 이상 송전선로 (미터)
가. 주거밀집지역 또는 관광지	2,000	1,500
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다. 5호 미만 주거지역 또는 축사	1,500	1,000

비고

- 1) “발전용량”이란 연접한 부지 30미터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 발전허가를 받고 시행계획이거나, 개발행위준공 1년 이내 또는 시행중인 발전시설을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
- 2) “도로”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 3)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와 가구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를 말한다.
- 5)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이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전통 사찰 등 조용하고 평온한 주변환경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신 설>
- 6) “축사”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 설>

주요 의견	제출인	비고							
이격거리 기준에 주민참여형 사업(전체사업비의 4% 지분참여) 및 60%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하는 사업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는 단서 조항 추가	광*군 등 2명								
○ 이격거리 확대 <table border="1" data-bbox="170 884 1129 1158"> <thead> <tr> <th>구분</th> <th>풍력발전기 (미터)</th> </tr> </thead> <tbody> <tr> <td>가.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td> <td rowspan="2">1,500 → 3,000</td> </tr> <tr> <td>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td> </tr> <tr> <td>다. 5호 미만 주거지역 이나 축사</td> <td>1,000 → 2,000</td> </tr> </tbody> </table>	구분	풍력발전기 (미터)	가.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1,500 → 3,000	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다. 5호 미만 주거지역 이나 축사	1,000 → 2,000	정*호 등 4명	
구분	풍력발전기 (미터)								
가.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1,500 → 3,000								
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다. 5호 미만 주거지역 이나 축사	1,000 → 2,000								
○ 이격거리 확대 <table border="1" data-bbox="170 1321 1129 1594"> <thead> <tr> <th>구분</th> <th>풍력발전기 (미터)</th> </tr> </thead> <tbody> <tr> <td>가.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td> <td rowspan="2">1,500 → 2,000</td> </tr> <tr> <td>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td> </tr> <tr> <td>다. 5호 미만 주거지역 이나 축사</td> <td>1,000 → 1,500</td> </tr> </tbody> </table>	구분	풍력발전기 (미터)	가.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1,500 → 2,000	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다. 5호 미만 주거지역 이나 축사	1,000 → 1,500	신*범 등 39명	
구분	풍력발전기 (미터)								
가.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1,500 → 2,000								
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다. 5호 미만 주거지역 이나 축사	1,000 → 1,500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40
----------	---------

발의일자	2024. 04. 05.
발 의 자	신재화,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1. 제안 이유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화했으며, 청소년들이 그린씽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나. 공영자전거 그린씽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다. 그린씽의 기준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 2)
- 라. 그린씽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 3)
- 마. 그린씽의 무료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 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03. 26. ~ 04. 0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모든 군민”을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제5조·제6조)을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때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앞에 “제4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영자전거 그린씽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그린씽(이하 “그린씽”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그린씽 이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그린씽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의2(그린씽의 기준 및 이용료) ① 그린씽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지역은 군내로 함

2. 그린씽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그린씽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해야 함

② 그린씽의 이용 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그 밖에 그린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의3(그린씽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린씽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그린씽 및 관련 시설물의 점검·보수 등을 할 경우

제13조의4(그린씽의 무료이용)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씽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그린씽을 활용하는

경우

2.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회원

제14조의 제목 중 “군민자전거”를 “그린씽”으로 하고, 본문 중 “군민자전거”를 “그린씽”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운영·관리의 위탁)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그린씽 및 그린씽 전용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제30조·제31조)을 삭제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린씽의 무료이용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4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연회원권, 월회원권을 구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그린씽 사용료(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회 원	비회원	비 고
기본 사용료 (3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권 : 20,000원 ▪30일권 : 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권 : 1,000원 	<p>○기본 사용료의 사용시간 범위에서 반복이용은 가능하다. 이 경우 별도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p> <p>○추가 사용료의 산정에 있어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추가 사용료	3시간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당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당 1,000원 	

※ “회원”이란 그린씽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린씽 사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장 총칙</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군민자전거</u>”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u></p> <p>2. “<u>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u>”이란 <u>군민 자전거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u></p> <p>제3조(군의 책무) <u>군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p> <p>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p> <p>4.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u>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u></p> <p>1.~4. (생략)</p> <p>제2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3조(군수의 책무)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u></p> <p>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p> <p>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p> <p>4.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p> <p>5. <u>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u></p> <p>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u>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u></p> <p>1.~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영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법 제11조와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삭 제>

<삭 제>

<삭 제>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때 공원, 하천, 버스정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신 설>

제4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제13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자전거의 이용 가능
2. 군민자전거의 이용지역은 군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군민자전거는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할 것
4. 군민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그의 귀책사유로 군민자전거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할 것

③ 군수는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그 밖에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공영자전거 그린씽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그린씽(이하 “그린씽”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그린씽 이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그린씽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의2(그린씽의 이용기준 및 이용료) ① 그린씽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지역은 군내로 함

2. 그린씽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그린씽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해야 함

② 그린씽의 이용 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그 밖에 그린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그린씽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린씽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그린씽 및 관련 시설물의 점검·보수 등을 할 경우

<신 설>

제13조의4(그린씽의 무료이용)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씽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그린씽을 활용하는 경우
2.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회원

제14조(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군민들이 군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장소 외에 공원, 하천,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공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4조(그린씽 전용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군민들이 그린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장소 외에 공원, 하천,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공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그린씽 전용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운영·관리의 위탁)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그린씽 및 그린씽 전용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삭 제>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주차장·군민자전거·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를 그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여하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41
----------	---------

발의일자	2024. 04. 05.
발 의 자	김향란,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거창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4에이치육성'에서 '4에이치활동'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다.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라. 지원계획 수립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마. 지원 사업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다. 합 의 : 농업축산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03. 27 ~ 04. 0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3.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 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4. 농업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

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우수사례 홍보
6. 4에이치 정보지 보급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 등을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붙 임】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거창군 4에이치 육성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기존에 확보한 예산(44,800천원)을 통해 거창군 4에이치
활동지원

4. 작성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